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수원역 환승센터 인근 흡연자 및 노숙자 다수로 인한 피해

□ 신청 원인

- 신청인은 출퇴근 시 수원역 환승센터 하층부에 머물고 있는 노숙인들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과 매일 음주, 스피커 소음 등으로 공포심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자녀들에게도 위협이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환승센터 주변 1~2k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에 따르면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이며 피신청인은 조례에 따라 환승센터 내 버스정류소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 민원인이 제기한 버스정류소 하층부는 현재 금연 구역이 아니며, 금연구역의 지정은 지역사회 요구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규제가 수반되므로 지정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의 사전 의견수렴 과정이 중요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에 따라 노숙인 등을 강제로 시설에 입·퇴소시키는 행위는 할 수가 없으며 타 시·군 주요 역사에서도 동일한 노숙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 현재는 혹한기이기에 노숙인이 머물고 있는 텐트를 철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유관기관 합동으로 환경정비를 계획 중임

□ 사실관계

- 신청인이 노숙인들의 흡연장소로 지목한 환승센터 버스정류소 하층부는 구조상 비와 눈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전거주차장 시설이 바람도 막아주어 노숙인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이며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곳에서 흡연하는 노숙인을 발견할 수 있었고, 간접 흡연이 우려되는 상황임
- 흡연을 야기하는 주체가 대부분 노숙인이며, 금연구역이 확대될 경우 현재의 단속인력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문제와 극빈층인 노숙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실효성이 없음
- 흡연자제 권고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금연 홍보활동과 금연 계도활동, 노숙인 유입을 제한하는 청결한 환경조성 등 실효성이 높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에 따라 노숙인은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킬 수 없고, 타 시군에서도 노숙인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 유관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도 하고 환경정비 종합 계획도 수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혹한기를 지나면 노숙인의 이전을 지원하고 이후에 환경정비 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현재 이를 위한 노숙인 설득을 하고 있으며 전년에도 이같은 활동이 성과를 거둔 만큼 실효성이 높은 활동임

□ 관계법령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 판단 및 결론

- 노숙인들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삶의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인데 이러한 노숙인들에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고 해도 노숙인들에게는 무의미하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단속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노숙인 흡연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오히려 충돌로 인해 타 구역의 단속을 하지 못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유관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2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하였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왔으며, 환경정비 종합계획도 수립하여 텐트 등 적치물 방치로 인한 시민불편 문제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등 노숙인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혹한기에는 인권문제로 노숙인들에 대한 이전을 요청하기 어려웠으나 향후 노숙인의 이전을 지원하고 이후에 환경정비 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현재 이를 위한 노숙인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년도에도 이 같은 활동이 성과를 거둔 만큼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됨
- 다만, 이 같은 노숙인 문제 해결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숙인 유입을 제한하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수원역 환승센터에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와 금연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환승센터 하층부 자전거주차 시설의 확장·증축, 쌈지공원 조성 등을 통해 노숙인 유입을 제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시정권고)

□ 민원 제목 : 지게차 적성검사 과태료 부과 취소 요청

□ 신청 원인

- 신청인은 지게차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 피신청인으로부터 정기적성검사 받으라는 사전안내를 못 받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기간 경과 후 과태료 대상자가 된 데 대해 부당함을 주장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2018.9.8.)으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인 2019. 3. 19. 부터 시행되었는데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행위가 의무 위반 행위가 된 경우, 이를 국민에게 사전 안내할 의무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에 없으며, 「건설기계관리법」에도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야 할 의무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함
- 의무규정이 없음에도 사전안내문을 보낸 것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면허취소 및 과태료 최고 금액인 200만원이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진행되므로 과도한 금액에 도달하는 걸 방지하고자 보낸 것이라고 하며, 2024. 1. 3. 당해연도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정기적성검사 이수 기한 내 받으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등기발송 하였음
- 따라서, 신청인의 정기적성검사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초과기간을 가산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고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2분의1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함

□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이수 안내문을 2024. 1. 3. 발송했으나 2024. 1. 26. 반송되었고, 신청인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안내문을 2025. 2. 8. 발송했으며 2025. 2. 14. 배달 완료됨
- 신청인은 2025. 2. 14.에 피신청인이 보낸 안내문을 받고 2025. 2. 17. 정기적성검사를 이수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검사 마감일 이후 48일이 경과함에 따라 당초 과태료 금액 30만원에서 1/2 경감사유를 적용하여 2025. 3. 10. 과태료 금액 15만원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함
- 본건과 관련하여 2025. 2. 25. 국토교통부에 피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 사전안내 의무가 있는지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제도 시행 당시 등록관청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적성검사 시작일 기준으로 1개월 전, 적성검사 미 이행자 대상자에게 검사 마감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각 1차례씩 사전안내 고지 시행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2019. 4. 23.)한 바 있다고 2025. 3. 5. 회신함

○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과-2758호(2019. 4. 23.)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미 이행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규제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준한 사전통지를 이행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임

□ 관계법령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29조, 제44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제8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8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10년이 되는 해인 2024. 12. 31.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제도가 2019. 3. 19. 시행된 이후 신청인은 이러한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이수 사전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5. 2. 14.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안내문을 받고 2025. 2. 17. 정기적성검사를 이수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25. 3. 10.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음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2024. 1. 3. 신청인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2024. 1. 26. 반송되었고 이후 추가로 신청인에게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이 고의·과실로 정기적성검사를 미이수했다고 판단되지 않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사전안내 할 의무도 없고 규정도 없다고 주장하나,

- 국토교통부에서 2019. 4. 23. 시달한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관청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적성검사 시작일 기준으로 1개월 전, 적성검사 미이행 대상자에게 검사 마감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각 1차례씩 사전 안내 고지” 할 것을 시행하였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는 미 이행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규제 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준한 사전통지를 이행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임”을 주지하였음
- 그럼에도 신청인에게 2024. 1. 3. 등기발송 후 2024. 12. 31. 정기적성검사 마감일 이후인 2025. 2. 8.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위와 같은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 이수를 인지한 시점이 정기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이후인 2025. 2. 14.이고, 신청인은 2025. 2. 17. 정기적성검사를 완료하였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검사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안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신청인이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025. 5. 14.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안내 절차에 흠결이 있고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1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에 대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세부지침(처분유예 포함)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피신청인2에게 향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관련 지침에 따라 적극 사전안내를 하여 시민 피해를 줄일 것과 신청인에게 사전통지된 과태료 처분(15만원)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